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767호 2010. 6. 30.(수)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 2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769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공시송달 공고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771호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772호 인천광역시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7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전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 1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774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 1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776호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공고 ----- 1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779호 2010년도 개별주택이의신청가격 조정공시 - 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781호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 2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782호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2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788호 열람공고문 정정(소3-502호선) 정정 공고 - 27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0-32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인천 서구 경서2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15점)을 고시합니다.

2010. 6.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 요

1.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2. 좌표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X좌표(m)	Y좌표(m)
별지참조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소 재 지 : 인천 서구 경서동 272번지 일원
- 측량연월일 : 2010년 3월 16일(지적도근점 15점)

4. 측량성과보관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사

■ 열람안내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하는 분은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 지 】

지적기준점(도근점)

일련번호	명 칭	중부좌표		계양좌표		세계측지계	
		X	Y	X	Y	X	Y
6735	지적도근점	450075.57	169677.05	-69.42	-5035.34	550381.637	169747.496
6736	지적도근점	450111.04	169558.76	-34.25	-5153.72	550417.110	169629.204
6737	지적도근점	450217.68	169456.71	72.14	-5256.04	550523.761	169527.149
6738	지적도근점	450248.17	169400.36	102.48	-5312.47	550554.246	169470.799
6739	지적도근점	450316.58	169355.89	170.78	-5357.11	550622.661	169426.332
6740	지적도근점	450335.61	169273.28	189.59	-5439.77	550641.682	169343.716
6741	지적도근점	450238.62	169288.46	92.64	-5424.35	550544.696	169358.892
6742	지적도근점	450199.00	169250.64	52.93	-5462.07	550505.080	169321.072
6743	지적도근점	450243.58	169182.60	97.34	-5530.21	550549.660	169253.040
6744	지적도근점	450291.26	169145.00	144.93	-5567.93	550597.340	169215.448
6745	지적도근점	450351.42	169161.21	205.12	-5551.87	550657.500	169231.663
6746	지적도근점	450371.83	169118.51	225.43	-5594.62	550677.914	169188.963
6747	지적도근점	450406.14	169094.66	259.68	-5618.56	550712.227	169165.112
6748	지적도근점	450465.45	169044.42	318.86	-5668.95	550771.541	169114.879
6749	지적도근점	450461.81	169176.40	315.56	-5536.96	550767.899	169246.85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7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제7차, 10차, 11차, 12차, 15차, 16차, 17차, 18차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보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해당서류가 반송되거나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재결서 정보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2. 사업자성명 :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3. 송달할 서류 : 재결서 정보(수용재결 제7차, 10차, 11차, 12차, 15차, 16차, 17차, 18차)
 4. 공 고 기 간 : 2010. 06. 28. ~ 2010. 07. 13.
 5. 공고대상자 : “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6. 재결서 교부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902)
- ※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0. 6. 2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771호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왕길동 소 2-50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06 월 28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왕길동 소2-501호선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시행자의 명칭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나. 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심곡동 244번지)
3.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2-501호선)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09-54호(2009.09.16)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2-501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09-80호(2009.12.29)
4. 사업시행기간 : 2009. 12월 ~ 2010. 12월
5. 수용재결 신청 대상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 "별첨"
6. 공고 및 열람기간 : 2010. 06. 28. ~ 2010. 07. 13.(15일간)
7. 열람 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032-560-4485)
8. 공고내용
 - 가.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 시행하는【왕길동 소2-50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열람 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 게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 지 조 서 (소2-501호선)

조서 번호	소 재 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주소	지번			계	도로내	도로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왕길동	209-28	장	8.0	8.0	8.0		이종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00 중앙아파트 103동 1201호	윤상덕 유광선 (주)이원 (주)이원 이문수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95-4 목동2차래미안 101-801 인천 부평 청천동 302-2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인천 서구 연희동 685-15 반석그린빌리지 301-301	가압류 가압류 지상권설정 근저당설정 근저당설정	
2	마전동	629-24	전	32.0	32.0	32.0		이용덕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355-1 한국아파트 102-204				
3	마전동	629-23	전	20.0	20.0	20.0		이용덕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355-1 한국아파트 102-20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0-772호

인천광역시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 06.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세칙 폐지에 따른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인천광역시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 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은 건당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7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052) 또는 팩스(560-405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2010-772 호

인천광역시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8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3제1항의”를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의“로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행정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 다음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은 건당 3백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세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8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이하“구”라 한다)에 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 ~③(생략)</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행정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사의 직에 있는 자 3.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 ~③(현행과 같음)</p> <p>④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 (삭제)----- -- <u>부교수이사의 직에 있는 자</u> 3. ----- -----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2조(준용) ① (생략)</p> <p>②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예산성과금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및 <u>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 관한세칙을 준용한다</u></p>	<p>제10조의2(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제4항에의 규정에 의한 <u>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은 건당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12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예산성과금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 _____을 _____ 삭제 _____을 준용한다</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0-773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6.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인천광역시서구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변경함
- 인천광역시 서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정투융자 사업을 심사하되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7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052) 또는 팩스(560-405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2010-773호

인천광역시서구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투·융자사업 관련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고, 서기는 투자심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구 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투·융자사업 관련 사항 <p>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p>

현행	개정안
	<p>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인천광역시 서구 투자심사위원회 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p> <p>② 간사는 예상담당이 되고 서기는 투자심사업무 담당자가 된다.</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774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연희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제28조(재결의 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0 1 0 . 6 . 2 9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연희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성 명 : 인천광역시장 (수임자: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장)
3. 사 업 시 행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4. 사 업 개 요 : 도시자연공원 조성(시설물 등 포함)
5. 열 략 기 간 : 2010. 6.29. ~ 2010.7. 13.
6. 열 략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 032-560-4805)
7. 의 견 서 제 출 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
8. 대 상 물 건 조 서 : “붙임” 참조 (원본: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비치)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녹지경관과(☎032-560-4805),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032-440-5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776호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시하오니 정정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10.1.1.
2.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54블럭 1-3롯트 외 1호
3.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의 산정대지면적, 개별주택가격 등
※정정내역 참조
4. 가 격 통 지 등 : 정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II.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개별주택가격의 정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
4. 결과통지 : 신청기각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

정정내역

2009.1.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반영내용

일련 번호	신청접수 일	성명	물건지		2008가격	2010가격(원)	정정가격(원)	처리내역	정정사유
1	05월 11일	정신영	원당동	블록54-103	36,500,000	1,020,000,000	373,000,000	산정면적수 정(1,483.3 ㎡->424.1	2009.6.18토지분할
2	05월 12일	수흥산업주	당하동	943-16	108,000,000	78,600,000	63,700,000	지번정정	2009.9.29 당하동943-2->산 214-3->943-16으로 지번정정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0-779호

2010년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공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2010년도 개별주택 이의신청가격 조정공시

1. 기 준 일 : 2010.1.1.
2.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61-3 (1호)
3. 조정·공시사항 : 위 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4. 가 격 통 지 등 : 조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781호

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제4차)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장물 등의 소유자께서는 열람하시고 재결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시행자 성명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어윤덕
 3. 수용할 물건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129번지 등 컨테이너 외 17건
 4. 열람기간 : 2010. 06. 30. ~ 2010. 07. 14.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902~3)
 6. 의견서 제출처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7. 본 공고에 대한 세부목록(재결신청서 및 사업자제시액조서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 032-560-5902~3)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소유자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수용 재결 대상 소유자 명단 1부.

2010. 6. 3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검단산단 2010년 제4차 수용재결 신청현황

연번	소유자명(업체명)	구분	주소	지번	지분율(물건수)	비고
1	이성한	지장물	인천시 서구 오류동 410-129	410-129	15건	이전비
2	수도권매립지공사	지장물	인천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10-6, 1330	2건	이전비
총 계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782호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도로사업【검단산업단지~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06 월 30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검단산업단지~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시행자의 명칭 : 인천도시개발공사
 - 나. 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지구38블럭 4롯데
3.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3-58호선)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09-399호 (2009.12.28)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3-58호선)사업시행자지정고시 제2009-398호(2009.12.28)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3-58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0-130호(2010.05.10)
4. 사업시행기간 : 2009. 12. 28 ~ 2011. 12. 31
5. 수용재결 신청 대상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 "별첨"
6. 공고 및 열람기간 : 2010. 06. 30 ~ 2010. 07. 15(15일간)
7. 열람 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032-560-4485)
8. 공고내용
 - 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시행하는 【검단산업단지~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열람 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 게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 제시액 조서(토지-필지별)

사업지구 : 검단산업단지~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지분	지분면적	평가액						사업자제시액		소유자		관계인		용도지역	비고			
			공부	현황				A감정		B감정		C감정		평균	단가	금액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서구 오류동	357-3	답	답	883.00	1/1	883.00	327,000	288,741,000	324,000	286,092,000	337,000	297,571,000	290,801,330	329,333	290,801,330	성락순	인천 서구 석남동 462-3 -103	남인천농협합동조합(원정지점) 남인천농협합동조합(원정지점)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근저당권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소계																290,801,330								
2	서구 오류동	357-8	답	답	933.00	1/1	933.00	327,000	305,091,000	324,000	302,292,000	337,000	314,421,000	307,268,000	329,333	307,268,000	성락순	인천 서구 석남동 462-3 -103	남인천농협합동조합(원정지점) 남인천농협합동조합(원정지점)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근저당권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소계																307,268,000								
3	서구 오류동	357-9	답	답	246.00	1/1	246.00	327,000	80,442,000	324,000	79,704,000	337,000	82,902,000	81,016,000	329,333	81,016,000	성락순	인천 서구 석남동 462-3 -103	남인천농협합동조합(원정지점) 남인천농협합동조합(원정지점)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소계																81,016,000								
4	서구 오류동	357-10	답	답	2,405.00	36/95	911.36	327,000	786,435,000	324,000	779,220,000	337,000	810,485,000	792,046,660	329,333	300,143,990	이영복	인천 남동구 장수동 806-3 주공아파트 101-1506					자연녹지지역	
소계																300,143,990								
5	서구 오류동	371-5	답	답	3.00	1/1	3.00	327,000	981,000	324,000	972,000	337,000	1,011,000	988,000	329,333	988,000	이동승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45 환곡아파트 104동 1107호					자연녹지지역	
소계																988,000								
6	서구 오류동	372-1	답	답	380.00	1/1	380.00	327,000	124,260,000	324,000	123,120,000	337,000	128,060,000	125,146,660	329,333	125,146,660	이용필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8-1 푸른마을 신성미지음 303동 1802호					자연녹지지역	
소계																125,146,660								
7	서구 오류동	373-1	답	답	2,094.00	1/1	2,094.00	327,000	684,738,000	324,000	678,456,000	337,000	705,678,000	689,624,000	329,333	689,624,000	강천구	인천 계양구 계산동 941 신도브레뉴아파트 102동 1201호					자연녹지지역	
소계																689,624,000								
8	서구 오류동	379-1	답	답	139.00	1/1	139.00	327,000	45,453,000	324,000	45,036,000	337,000	46,843,000	45,777,330	329,333	45,777,330	김형진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세계건설주식회사 검단농협합동조합(원정지점) 검단농협합동조합(원정지점)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5-5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강제경매 근저당권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소계																45,777,330								
9	서구 오류동	380-1	답	답	507.00	1/1	507.00	337,000	170,859,000	334,000	169,338,000	347,000	175,929,000	172,042,000	339,333	172,042,000	김형진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검단농협합동조합(원정지점) 세계건설주식회사 검단농협합동조합(원정지점)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5-5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지상권 강제경매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소계																172,042,000								
10	서구 오류동	383-4	대	대	108.00	1/1	108.00	1,105,000	119,340,000	1,094,000	118,152,000	1,138,000	122,904,000	120,132,000	1,112,333	120,132,000	김형진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검단농협합동조합(원정지점) 세계건설주식회사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5-5	근저당권 강제경매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소계																120,132,000								
11	서구 오류동	383-10	임	임	384.00	1/1	384.00	196,000	75,264,000	196,000	75,264,000	202,000	77,568,000	76,032,000	198,000	76,032,000	김형진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검단농협합동조합(원정지점) 검단농협합동조합(원정지점) 세계건설주식회사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5-5	근저당권 지상권 강제경매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소계																76,032,000								
12	서구 오류동	383-15	대	대	1.00	1/1	1.00	1,105,000	1,105,000	1,094,000	1,094,000	1,138,000	1,138,000	1,112,330	1,112,333	1,112,330	(주)한국토지신탁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4층					자연녹지지역	
소계																1,112,330								
13	서구 오류동	산148-12	임	임	463.00	1/1	463.00	196,000	90,748,000	196,000	90,748,000	202,000	93,526,000	91,674,000	198,000	91,674,000	김형진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세계건설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5-5	강제경매	자연녹지지역		
소계																91,674,000								
14	서구 오류동	산148-15	임	임	735.00	1/1	735.00	216,000	158,760,000	216,000	158,760,000	222,000	163,170,000	160,230,000	218,000	160,230,000	김형진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세계건설주식회사 검단농협합동조합(원정지점)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5-5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강제경매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소계																160,230,000								
15	서구 오류동	산148-16	임	임	90.00	1/1	90.00	212,000	19,080,000	216,000	19,440,000	222,000	19,980,000	19,500,000	216,666	19,500,000	김형진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검단농협합동조합(원정지점) 검단농협합동조합(원정지점) 세계건설주식회사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5-5	근저당권 지상권 강제경매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소계																19,500,000								
16	서구 오류동	357-13	답	답	60.00	36/95	22.73	327,000	19,620,000	324,000	19,440,000	337,000	20,220,000	19,760,000	329,333	7,488,000	이영복	인천 남동구 장수동 806-3 주공아파트 101-1506					자연녹지지역	
소계																7,488,000								
합계							7,900.09									2,488,975.640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788호

열람 정정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753호(2010.06.21.)와 관련하여 인천도시계획 시설 【도로명:소로3류502호선, 사업명:왕길동 소3-502호선 일원 도로개설 공사】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한 내용 중 용지조서의 일부에 표기에 의한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정 정 전 -

조서 번호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지번			계	도로 내	도로 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3	기정	왕길동	196-28	도	12	0.0	0.0	0.0	정숙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6 가락삼일맨션 210-201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설정	
	변경	왕길동	196-28	도	12	3.0	0.0	3.0	정숙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6 가락삼일맨션 210-201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설정	
15	기정	왕길동	196-19	도	1	1.0	0.0	0.0		인천광역시				
	변경	왕길동	196-19	도	1	1.0	1.0	0.0		인천광역시				

- 정 정 후 -

조서 번호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지번			계	도로 내	도로 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3	기정	왕길동	196-23	도	12	0.0	0.0	0.0	정숙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6 가락삼일맨션 210-201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설정	
	변경	왕길동	196-23	도	12	3.0	0.0	3.0	정숙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6 가락삼일맨션 210-201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설정	
15	기정	왕길동	196-19	도	1	1.0	0.0	0.0	두봉완	서울 종로구 명륜동 1가 33-85				
	변경	왕길동	196-19	도	1	1.0	1.0	0.0	두봉완	서울 종로구 명륜동 1가 33-8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753호(2010.06.21.)로 공람공고 된 사항 중 상기 정정 내용을 제외한 기타 내용은 변경 없음.

2010. 7. 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